|  |  |  |
| --- | --- | --- |
| **해관 특수감독관리구역 간 보세화물 이월 관리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4년 제83호  <국무원의 해관 특수감독관리구역 과학적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국발[2012]58호)을 구체 화하고 보세화물 물류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및 기타 유관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해관 특수감독관리구역 간의 보세화물 이월(結轉)관리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해관 특수감독관리구역 간의 보세화물 물류는 보세운송화물(轉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본 공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아래에서 서술하는 구간이월(區間結轉) 방식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2. 본 공고에서 구간이월이란 해관 특수감독관리 구역 내 기업(이하 “전출기업”으로 약칭)이 보세화물을 다른 해관 특수감독관리구역 내 기업(이하 “전입기업”으로 약칭)으로 이전하여 경영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구간이월 기업은 “화물은 회차 별로 발송하고 통관신고는 모아서 한꺼번에” 해관 수속을 처리할 수 있고, 화물 발송 및 수령은 기업이 자체 운송방식을 채택하거나 보세운송방식을 참조하여 진행할 수 있다.  4. 구간이월 기업은 해관의 구간이월업무 정보화관리 관련 규정과 해관 인트라망에 근거하여 당해 기업 보세화물 전자장부를 건립해야 하고, 규정된 시한 내에 정보화관리 시스템을 통해 해관에 사실대로 이월 비안(備案), 송수화인, 통관정보 등을 신고해야 한다.  5. 기업이 구간이월 업무를 전개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주관 해관에 <해관 특수감독 관리구역 내 보세화물 이월신고표>(이하 <신고표> 로 약칭)를 제출하여, 구간이월 비안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 전입기업이 신고표를 작성하여 전입 정보를 전입지 주관 해관에 신고한다.  (2) 전입지 주관해관 확인 후, 전출기업은 신고표를 작성하여 상응하는 전출 정보를 전출지 주관해관에 신고하고, 전출지 주관 해관은 이를 확인한다.  (3) 신고표는 전출지 주관 해관이 확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기업은 해관이 확인한 신고표를 가지고 실제 화물 수발 및 통관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6. 신고표는 아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하나의 신고표에는 전출기업과 전입기업 전자장부 각 1본이 상응되어야 한다.  (2) 신고표의 구간이월 보세화물 품목명, 상품코드, 계량단위 등 정보는 기업의 상응하는 전자장부와 일치해야 한다.  (3) 구간이월 양측의 상품신고 계량단위와 신고 수량이 일치해야 한다. 신고 계량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정 수량이 일치해야 한다.  (4) 구간이월 양측의 제품 코드 앞 8자리 숫자가 일치해야 한다.  (5) 신고표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이고 최장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초과된 경우 화물을 발송할 수 없다.  (6) 신고표는 전입지 주관 해관에서 등기하여 번호를 매긴다. 번호 매기는 방법 : “S"(구간이월 식별표시)+전입 해관 식별번호 4자리 수 + 연도번호 2자리 수 + 순서번호 5자리 수  (7) 신고표 비안 이후, 비안 상품은 변경 이 불가능하다.  7. 기업이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관은 기업이 신고한 신고표를 수리하지 않는다.  (1) 해관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하지 않아 해관으로부터 기한부 개정을 명령받고 그 개정 기한 중인 경우  (2) 밀수, 위법 혐의가 있어 해관이 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해관의 동의를 거쳐 보증금을 납부한 기업은 제외)  (3) 규정된 요건에 따라 통관신고 및 화물 수발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4) 기업 전자장부가 해관에 의해 수출입 잠정중단 처분을 받은 경우  (5) 기타 해관 감독관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비안이 처리된 이후 상술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관은 신고표를 잠정중단 처분할 수 있고, 잠정중단기간 중 기업은 화물을 발송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 하지만 신고표 항목 화물이 이미 실제로 발송되고 수령되었다면 통관수속 처리를 허용한다.  8. 기업은 구간이월 비안 수속을 한 후, 신고표에 따라 실제 화물을 발송 및 수령해야 한다. 기업은 회차별 화물 발송 및 수령 상황을 해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고, 해관은 이를 등기한다.  (1) 전출기업은 신고표에 따라 전출지 주관 해관에 구간이월 반출신고서를 제출하고, 전출지 주관 해관 창구 확인 후 해관은 화물 발송 정보를 등기한다.  (2) 전입기업은 신고표에 따라 전입지 해관에 상응하는 구간이월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전입지 주관 해관 창구 확인후 해관은 화물 수령 정보를 등기한다.  9. 해관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구간이 월 보세화물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송할 수 있다.  반출반입 창구에서 기업이 자체 운송용구를 이용하는 경우 해관에 비안하고, 운송용구 및 적재화물 관리에 관한 해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전출기업은 전입기업의 자체적인 운송용구를 사용하여 운송할 수 있다.  기업은 자체적으로 운송 노선, 시간, 도중 환적 운송용구 등 사항을 결정하기에 앞서, 사전에 해관에 신고해야 한다.  10. 구간이전 보세화물은 보세화물운송(轉關) 실제화물 발송 및 수령 방식을 참조하여, 보세화물운송 관련규정에 따라 해관 감독관리 차량으로 운송하고 해관 밀봉을 시행해야 한다.  11. 전출기업 및 전입기업은 각 회차의 실제 화물 발송 및 수령을 시행한 이후, 해관에 실제 발송 및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자 주관 해관에 선 반입신고, 후 반출신고 순서로 집중통관신고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반출 및 반입 통관신고 데이터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집중통관신고 수속은 연도를 넘어서 처리할 수 없다.  전입기업은 이월반입 통관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 통관신고 상황을 전출기업에게 통지해야 한다.  12. 기업이 실제로 화물을 발송하고 수령한 이후, 아래 규정에 따라 이월 통관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 기업은 신고표 항목에 따라 순차 또는 다회차에 걸쳐 진행된 화물 수발 상황을 합쳐서 주관 해관에서 집중통관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2) 기업이 비안 목록표 작성시, 해관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하게 이월 보세화물 품목명, 상품코드, 규격, 수량, 가격 등 내용을 작성하여 해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나의 이월 반입구역 비안 목록표는 반드시 하나의 이월 반출구역 비안 목록표와 대응해야 한다. 반입 및 반출구역 비안 목록표 간에는 상응하는 신고번호, 상품코드 앞 8자리 수, 가격, 수량(또는 환산 후 수량)이 일치해야 한다.  반출구역 비안 목록표 중 “관련 통관신고 번호” 란에는 대응하는 반입구역 비안 목록표 번호를 기입한다.  비안 목록표에 “관련 비안” 란에 기입된 내용은 상호 대응하여야 한다. 반입구역 비안 목록표의 “관련 비안” 란에는 반출구역 기업 비안 장부 번호를 기입하고, 반출구역 비안 목록표의 “관련 비안” 란에는 반입구역 기업 비안 장부 번호를 기입한다.  부속문건 코드는 “K”(심가공이월)라고 기입하고, 반입 및 반출구역 비안 목록표 부속문건 코드 란에는 상응하는 신고표 번호를 기입한다.  운송방식 란에는 “기타”(코드 “9”)를 표시 한다.  래료(來料)가공무역 방식에서의 이월은 기업 감독관리 방식 란에 “래료 심가공이월”(코드 “0255”)이라고 기입한다. 진료(進料) 가공무역 방식에서의 이월은 기업 감독관리 방식 란에 “진료 심가공이월”(코드 “0654”)이라고 기입한다.  도착국(지역) 란은 “중국(코드 “142”)이 라고 기입한다.  (3) 기업이 순차 또는 다회차 이월을 합쳐서 주관 해관에 통관신고를 하는 경우, 이월 당사자 양측의 실제 화물 발송 및 수령 수량에 따라 이월 통관 수량을 확정한다. 실제 수령한 화물 수량과 실제 발송한 화물 수량이 같은 경우 이월 당사자 양측은 같은 수량으로 통관수속을 진행한다. 실제 수령한 수량이 실제 발송한 수량보다 적은 경우 이월 당사자 양측은 실제 수령한 화물 수량을 기준으로 통관수속을 진행하고, 실제 발송 수량과 신고 수량간의 차이 부분은 전출기업이 전출지 주관 해관에서 보충 수속을 처리한다. 만약 허가증 관리 제품에 속할 경우 해관에 유효한 수입허가증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실제 수령한 화물 수량이 실제 발송한 수량보다 많은 경우, 이월 당사자 양측은 실제 발송한 수량에 따라 통관수속를 진행하고, 실제 수령 화물 수량과 신고 수량 간의 차이 부분은 전입기업이 전입지 해관에서 반입구역 비안 목록표를 작성하고 반입통관 수속을 처리한다.  (4) 기업이 신고 부실 등 현행 규정을 위반하여 이월한 화물에 대해, 해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의 동의를 거쳐 담보금 징수 후 통관수속을 처리해 줄 수 있다.  (5) 기업 전자장부 말소시 이월 당사자 양측의 비안 목록이 일치해야 한다. 반출 반입 구역간의 비안 목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관은 말소신고를 접수하지 않는다.  13. 품질 미달 등 원인으로 화물을 반송하거나 반환하는 경우, 전입기업과 전출기업은 각각 자신의 주관 해관에서 반송 및 반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을 처리한다.  14. 본 공고에서 말하는 보세화물이란 해관 비준을 거쳐 납세 수속을 처리한 수입화물이나, 수출수속을 처리하였으나 아직 국경을 떠나지 않고 해관 특수감시관리구역 내에 보관, 가공, 조립 중인 화물을 말한다.  이와 같이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4년 11월 19일 |  | **关于海关特殊监管区域间保税货物结转管理的公告**  海关总署公告2014年第83号  为落实《国务院关于促进海关特殊监管区域科学发展的指导意见》（国发〔2012〕58号），提高保税货物流转效率，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和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现将海关特殊监管区域间保税货物结转管理有关事宜公告如下：  一、海关特殊监管区域间保税货物流转，按照转关运输的有关规定办理，符合本公告要求的也可以按照下述区间结转方式办理。  二、本公告所称区间结转是指海关特殊监管区域内企业（以下简称转出企业）将保税货物转入其他海关特殊监管区域内企业（以下简称转入企业）的经营活动。  三、区间结转企业可以采用“分批送货、集中报关”的方式办理海关手续，收发货可采用企业自行运输或者比照转关运输的方式进行。  四、区间结转企业应当根据海关对区间结转业务信息化管理的有关规定与海关联网，建立企业保税货物电子底账，并在规定的时限内，通过信息化管理系统，向海关如实申报结转备案、收发货、报关等信息。  五、企业开展区间结转业务，应当按照以下流程向主管海关申报《海关特殊监管区域保税货物结转申报表》（以下简称《申报表》），办理区间结转备案手续：  （一）转入企业填报《申报表》转入信息向转入地主管海关申报。  （二）转入地主管海关确认后，转出企业填报《申报表》相应的转出信息向转出地主管海关申报，转出地主管海关进行确认。  （三） 《申报表》从转出地主管海关确认之日起生效，企业可以按照经海关确认后的《申报表》进行实际收发货，办理报关手续。  六、 《申报表》应符合以下要求：  （一）一份《申报表》对应转出企业一本电子账册和转入企业一本电子账册。  （二） 《申报表》中区间结转保税货物品名、商品编号和计量单位等信息应与企业对应电子账册一致。  （三）区间结转双方对应商品申报计量单位和申报数量应当一致，申报计量单位不一致的法定数量应当一致  （四）区间结转双方的商品编号前8位应当一致。  （五） 《申报表》有效期一般为半年，最长不超过1年，逾期不能发货。  （六） 《申报表》由转入地主管海关进行登记编号，编号办法为：“S”（代表区间结转)+转入关别4位+年份2位+顺序号5位。  （七） 《申报表》备案后已备案商品不能变更。  七、 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企业申报的《申报表》海关不予受理：  （一）不符合海关监管要求，被海关责令限期整改，在整改期内的；  （二）涉嫌走私、违规已被海关立案调查，尚未结案的（经海关同意，并已收取担保金的涉案企业除外）；  （三）未按规定要求报关或者收发货的；  （四）企业电子账册被海关暂停进出口的；  （五）其他不符合海关监管条件的。  备案后如发生上述情况，海关可对《申报表》进行暂停处理，在暂停期间企业不能进行收发货，但《申报表》项下已实际收发货的，允许办理报关手续。  八、企业办理区间结转备案手续后，应当按照《申报表》进行实际收发货。企业的每批次收发货，应向海关如实申报，海关予以登记：  （一）转出企业按照《申报表》向转出地主管海关申报区间结转出区核放单，转出地主管海关卡口核放确认后，海关登记发货信息。  （二）转入企业按照《申报表》向转入地主管海关申报对应的区间结转入区核放单，转入地主管海关卡口核放确认后，海关登记收货信息。  九、 符合海关监管要求的，区间结转保税货物可由企业自行运输。  进出卡口的企业自行运输工具应经海关备案，并遵守海关对运输工具及其所载货物管理的规定。转出企业可以使用转入企业自行运输工具进行运输。  企业自行运输的线路、时间、在运输途中换装运输工具等事项，需提前向海关报备。  十、区间结转保税货物比照转关运输方式实际收发货的，应按转关运输有关规定使用海关监管车辆运输，施加海关封志。  十一、转出、转入企业每次实际发货、收货后，应当在每次实际发货、收货之日起30日内在各自主管海关按照先报进、后报出的顺序办结集中报关手续，转出与转入报关数据应对碰一致。集中报关手续不得跨年度办理。  转入企业应在结转进口报关之日起2个工作日内将报关情况通知转出企业。  十二、企业实际收发货后，应当按照以下规定办理结转报关手续：  （一） 企业按照《申报表》项下实际收货逐批或者多批次合并向主管海关办理报关手续。  （二）企业填制备案清单时，应当按照海关规定如实、准确地向海关申报结转保税货物的品名、商品编号、规格、数量、价格等项目。  一份结转进区备案清单对应一份结转出区备案清单，进区、出区备案清单之间对应的申报序号、商品编号前8位、价格、数量（或折算后数量）应当一致。  出区备案清单中“关联报关单号”栏应填写所对应的进区备案清单号。  备案清单所填写的“关联备案”栏应相互对应，进区备案清单的“关联备案”栏应填写出区企业备案的账册号，出区备案清单的“关联备案”栏应填写进区企业备案的账册号。  随附单证代码填写“K”（深加工结转），进区、出区备案清单随附单证的单证编号栏内填写对应《申报表》编号。  运输方式应当填写“其他”（代码“9”）。  以来料加工贸易方式结转的，企业监管方式应当填写“来料深加工结转”（代码“0255”）；以进料加工贸易方式结转的，企业监管方式应当填写“进料深加工结转”（代码“0654”）。  启抵国（地区）应当填写“中国”（代码“142”）。  （三）企业逐批或者多批次合并向主管海关办理报关手续时，应根据结转双方实际收发货数量确定结转报关数量。实际收货数量与实际发货数量相同的，结转双方按相同数量报关；实际收货数量少于实际发货数量的，结转双方按实际收货数量进行报关，实际发货数量与报关数量差异部分由转出企业向转出地主管海关办理补税手续，如属许可证件管理商品，还应向海关出具有效的进口许可证件；实际收货数量大于实际发货数量的，结转双方按实际发货数量进行报关，实际收货数量与报关数量差异部分由转入企业向转入地海关申报入区备案清单，办理货物入区报关手续。  （四）企业发生申报不实等违规行为的结转货物，经海关按照相关规定作出处罚或者经海关办案部门同意并收取足额担保金后，可以办理报关手续。  （五）企业电子账册核销时，结转双方进出区备案清单应对碰一致，进出区备案清单不能一一对应的，海关不予接受报核；  十三、因质量不符等原因发生退运、退换的，转入企业、转出企业分别在其主管海关按退运、退换的有关规定办理相关手续。  十四、本公告所称保税货物是指经海关批准未办理纳税手续进境或者已办理出口手续未出境，在海关特殊监管区域内储存、加工、装配的货物。  特此公告。  海关总署  2014年11月19日 |